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1998년 11월 23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정기회 제14차 행정위원회('98.12.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정인화)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1천만원 미만으로 포괄규정하고 있어
- 발생되는 불용품이 저가이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요조회를 하게 되어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어 이를 시정하고 신속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 1천만원 미만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토록 개정함(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준석)

동 조레의 개정은 제15조제3항에서 불용품의 소요조회 물품을 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1천만원 미만으로 포괄규정하고 있어 발생되는 불용품이 저가이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도 소요조회를 하게 되므로 행정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신속한 물품관리 체제를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29 벼 호

제출년월일: 1998. 11. 20. 제 출 자: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1천만원 미만으로 포괄규정하고 있어.
- 발생되는 불용품이 저가이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소요조회를 하게 되어 햇젓적인 낭비요소가 있어 이를 시젓하고 신속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불용품의 소요조회 1천만원 미만을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조회토록 개정함(안 제3조 제3항)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03조, 동 시행령 제126조

물품관리조례 개정준칙(회계1330-3215. '98.8.10)

○ 합의사항 : 없음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개정조례안 : 별 첚

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③항의 단서조항 중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 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물품취득가격(장부기준)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항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 사업소, 서울특별시 관한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중앙행정기관, 직할시·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서울특별시관할구역안에 있는 자	개 정 (안) 제15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항 생략(현행과 같음) ③
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